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수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2414

발의연월일: 2024. 7. 30.

발 의 자:이수진 · 민병덕 · 이기헌

송옥주 • 박해철 • 황정아

정태호・조 국・최기상

한정애 • 민형배 • 박홍배
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는 경우 지급되는 산재 요양급여가 결정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그 결정 전에는 「국민건강보험법」에 따른 요양급여나 「의료급여법」에 따른 의료급여를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이에 「국민건강보험법」에 상병급여를 도입하는 경우에도 산재 요양급여 결정 전에는 우선적으로 상병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여 질병과 부상으로부터 노동자의 건강과 생활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(안 제42조제1항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이수진의원이 대표발의한 「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

법률안」(의안번호 제2412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법률 제 호

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2조제1항 중 "요양급여"를 "요양급여, 같은 법 제49조의2에 따른 상병급여"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건강보험의 우선 적용에 관한 적용례) 제4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49조의2에 따라 상병급여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혀 행

개 정 안

제42조(건강보험의 우선 적용) ①
제41조제1항에 따라 요양급여
의 신청을 한 사람은 공단이
이 법에 따른 요양급여에 관한
결정을 하기 전에는 「국민건
강보험법」 제41조에 따른 요
양급여 또는 「의료급여법」
제7조에 따른 의료급여(이하
"건강보험 요양급여등"이라 한
다)를 받을 수 있다.

제42조(건강보험의 우선 적용) ①
제41조제1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신청을 한 사람은 공단이의 법에 따른 요양급여에 관한결정을 하기 전에는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, 같은 법 제49조의2에 따른 상병급여 또는 「의료급여병」 제7조에 따른 의료급여 여법」 제7조에 따른 의료급여 (이하 "건강보험 요양급여등"이라 한다)를 받을 수 있다.

② (생략)

② (현행과 같음)